

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사회부·IT정보통신 담당
발 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담당 : 문은옥 간사 02-723-5303 min@pspd.org)
제 목 [보도자료] 참여연대, 이통 3사 5G 허위·과장광고 공정위 신고
날 짜 2020. 06. 08. (총 2 쪽)

보 도 자 료

참여연대, 이통 3사 5G 허위·과장광고 공정위 신고

상용화 14개월 지났음에도 광고 내용대로 서비스 제공 안돼
5G 성능 및 기능, 사용지역 등 제한사항도 정확히 표기하지 않아
소비자오인 유도하는 광고 중단하고 불통현황 등 제대로 안내해야

일시 장소 : 2020.06.08. (월) 11:00,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오늘(6/8) 이통3사의 대표적인 5G 광고를 분석해 ▶5G 서비스를 이용하면 최첨단 미래 삶으로 변화할 것을 오인케 한 점, ▶전국에서 이용 가능 한 것으로 오인케 한 점, ▶VR, AR 콘텐츠가 5G 전용 콘텐츠로 오인케 한 점 등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습니다.
2. 작년 4월 3일 세계최초 5G 상용화를 준비하며 이통3사는 사상 최대의 광고비 집행했습니다. 2019년 한 해동안 이통3사의 마케팅비 지출 총액은 8조540억원으로 전년대비 10.5%나 더 많이 사용했습니다. 2017년부터 5G를 알려 왔으니 실제 사용한 마케팅비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입니다. 이통 3사는 지속적으로 5G 이동통신서비스는 최첨단 기술이고 앞으로 ‘초시대’, ‘초현실’ 세상이 될 것이고 ‘5G를 더해 일상이 바뀌는’ 삶을 경험할 것이라고 광고·홍보 해왔습니다. 그러나 전국 상용화를 발표한지 14개월이 지났음에도 이통3사가 광고에서 보여줬던 삶의 변화는 크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부족한 기지국으로 인한 ‘끊김현상’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이통3사는 이같은 소비자 불만을 쉬쉬하며 개별 보상으로 무마하고 있습니다.
3. 최근 영국의 무선통신서비스 시장조사기관인 오픈시그널이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SKT, KT, LGU+(이하 ‘이통3사’) 접속 속도는 우리와

세계최초 상용화 타이틀을 두고 경쟁했던 미국 버라이즌보다 평균 다운로드 속도가 **44% 느린 224Mbps**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평균 **5G** 접속시간은 하루 **24시간 중 15%, 3사평균 3.4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 순간 사용하는 생활필수품이 되어버린 휴대폰의 **5G** 성능이 이렇게 형편없을 거라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결과를보고 이통3사는 “종합적인 **5G** 품질은 한국이 가장 높다”라며 자화자찬했습니다. 여전히 기지국 부족으로 실내에서는 이용이 불가하고 이동통신임에도 이동하며 사용이 불가한 **5G** 서비스에 호소하는 대다수의 이용자들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4. 이통3사는 **5G** 상용 전부터 전파 도달거리가 짧고 장애물 통과율이 낮은 **5G** 전파 특성상 기지국 부족으로 인한 ‘끊김현상’, ‘빠른 배터리 소진’, ‘일부지역에서만 이용가능’ 등의 **5G** 이용자의 불편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2GB** 영화를 **0.8초**만에 다운로드 가능한 것은 **28GHz** 기지국이 설치되어야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제 설치된 기지국은 **3.5GHz**였고 단말기 역시 **3.5GHz** 전파를 수신할 수 있을 뿐이었기 때문에 **2019**년에 **5G** 무선이동통신서비스를 가입한 사람 중 단 한사람도 경험하지 못하는 속도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5. 또한 부족한 **5G** 기지국으로 인해 전국에서 사용가능하지 않음에도 이용 가능한 지역이나 기지국 설치 예상일 등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은 채 비무장지대 마을, 시골 할머니댁 등 전국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것으로 오인케하는 광고를 내보냈습니다. 게다가 **VR, AR** 콘텐츠는 **5G** 서비스가 아닌 **LTE**, 와이파이, 심지어 **3G**에서도 이용이 가능함에도 **5G** 전용 콘텐츠로 홍보해 **5G** 휴대폰 구입을 유도하는 행위를 했고 최근까지도 이같은 홍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6. 형편없는 **5G**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수익의 **3배**가 넘는 비용을 광고비로 사용하며 소비자 기만적인 허위·과장광고를 지속하는 이통3사의 모습을 더 이상 두고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형편없는 **5G** 서비스를 꿈의 기술인 것처럼 포장해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광고를 더 이상 하지 않도록 공정위에서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통3사도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허위과장 광고를 즉각 중단하고 통신불통으로 인한 **5G** 서비스 요금 감면과 기지국 구축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끝.

▣ 붙임 1 : 기자회견 개요

▣ 붙임 2 : [이통3사의 5G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공정위 신고서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 1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이통3사의 5G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0. 06. 08. 월 11:00 /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 주최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참석자
 - 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 팀장
 - 공정위 신고 취지 설명 :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변호사
 - 이통3사의 대표적인 5G 광고 속 허위·과장 내용 : 주영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자문위원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문은옥 간사 02-723-5303, min@pspd.org

신고취지

피신고인들은 5G 무선이동통신서비스를 광고함에 있어 소비자가 5G 무선이동통신서비스 이용시 발생할 일들에 대한 정보를 허위·과장되게 전달했습니다. 5G 휴대폰 단말기만으로 구현이 불가능하거나, 상용화 1년이 지난 현재도 구현되지 않는 기술들을 홍보하면서 활용 가능한 시점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으며, 5G 휴대폰 단말기가 없더라도 구현 가능한 기능임에도 이를 명확히 안내하지 않아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과장된 표시·광고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로써 신고인은 피신고인들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신고하오니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고, 시정조치로서 위와 같은 위법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에 위와 같은 위법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신고인들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어 과징금을 내려주시고 소비자들에 대해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